



2023_{년도}

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

2023년 제도개선 추진경과

1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(~'23.3월)

- ☑ '23년도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 (총 10회 이상)

※ 주체별 : 대기업(2.1), 중견·중소기업(2.14), 대학(2.17), 출연연('22.12.1)

주제별 : 사회문제해결형R&D(2.1), 국제협력R&D(2.14), 연구보안('22.11.11)

권역별 : 수도권·강원권('22.12.6), 충청권('22.12.8), 호남권('22.12.13), 영남권('22.12.16)

- ☑ 제도개선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,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('23.1월)

2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'23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통보('23.3월)

3 연구현장·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의견 접수 및 제도개선위원회 검토 ('23.4월~7월)

- ☑ IRIS(온라인) 및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제도 관련성, 명료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

※ IRIS(온라인) 의견 접수 방법 : IRIS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 홈페이지 <https://www.iris.go.kr> 접속



2023년 행정제도 개선(안)

추진 목표 : 혁신·도전의 선도형 R&D시스템으로 전환

1.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

- 1) 종이없는 연구환경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면제 명확화
- 2) 학생인건비 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
- 3)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 관리

3.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- 1) 국외 수혜정보 관리체계 구축
- 2)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
- 3) 연구보안 현장 가이드라인 및 해외사례집 마련

2.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- 1)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제도 마련
- 2) 국제공동연구 수행 영리기관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
- 3)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기준 완화

4.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

- 1)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
- 2)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제도 폐지
- 3) 연구성과 부분공개 제도 신설

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, 하위 규정(고시) 개정 사항 등 연구현장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1)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

(1) 종이없는 연구환경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 면제 명확화

현장의 목소리



“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증명자료의 보관 면제
규정이 재량으로 되어 있어 심리적 부담 존재”

현황 및 문제점

- ✓ 정산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출력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
But, 스캔본 등에 대한 출력 요구 금지 규정은 부존재

*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자료는 연구기관 재량에 따라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

- ✓ 국가 R&D 감사에서 증명자료 보관 및 출력 요구 금지에
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

개선방안

- ✓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증명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,
출력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및 상향입법 추진
 - 국가 R&D 관련 감사 업무도 증명자료에 대해 동일 규정 적용

	현행	개선(안)
증명자료 보관 면제 규정	시스템 등록 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	시스템 등록 시 보관한 것으로 간주
출력 요구 금지 대상 자료	전자문서 전자화 문서	전자문서, 전자화문서 시스템 등록 자료
증명자료 보관 면제 대상사무	정산	정산, 감사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1)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

(2) 학생인건비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

현장의 목소리



- “학생인건비 실지급 향상 지속 요구”
- “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자 및 잔액 명확화 필요”

현황 및 문제점

- ☑ 연구활동비 사용을 위해 학생연구자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상황 발생

* 현재 계상기준의 평균 44% 지급률 지급(상향 전 기준의 53%) 10% 이하 지급 8.9%

- ☑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자, 잔액 등 확인에 애로

개선방안

- ☑ 소액 지급 방지,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,, 학생인건비 계좌 분리 통해 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

* 현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65개 기관 중 45개 기관이 이미 계좌분리 시행

	현행	개선(안)
소액 지급 방지	계상률 1% ~ 100% 자율 확약	계상률 10% 이상 확약
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	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60퍼센트 미만	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50퍼센트 미만
학생인건비 계좌 분리	연구개발과제와 동일 계좌로 시스템에 의한 학생인건비 관리	학생인건비 전용 계좌 분리로 이자 및 잔액의 투명성 확보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1)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

(3)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 관리

현장의 목소리



- “회의비가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 필요”
- “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여비 계상 기준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이견 존재”

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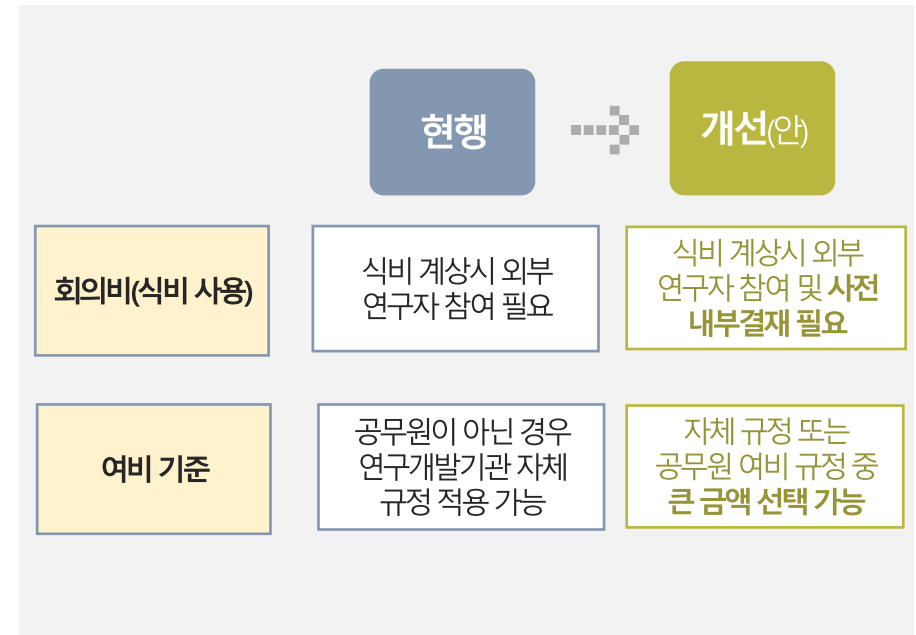
- ✓ 외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사후 증빙만으로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

*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식비 계상이 금지되나
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가능

- ✓ 과제 참여 인력의 여비 계상시 기관 자체규정이 없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대비 낮은 수준에서 운용

개선방안

- ✓ 회의비 중 식비 사용, 여비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, 효율성 강화

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2)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(1)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제도 마련

현장의 목소리



“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위해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관련 과제관리 방법에 대한 종합적 안내 필요”

현황 및 문제점

- ✓ 해외기관이 법령상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에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어려움
- ✓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수행방법 등에 대해 연구현장에 구체적 안내 필요

개선방안

- ✓ 해외기관이 혁신법상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과제 수행·관리 위한 안내서 마련
 - 혁신법(시행령)에 연구개발기관 관련 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연구기관 인정 추진

현행		개선(안)
법령상 연구개발기관	해외기관 미포함	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 추가
국제공동연구 매뉴얼	없음	수행단계별 관리방법 안내 매뉴얼 마련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2)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(2) 국제공동연구 수행 영리기관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

현장의 목소리



“영리기관이 국제공동 R&D 국제공동연구비를 계상할 경우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도 기관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부담 증가”

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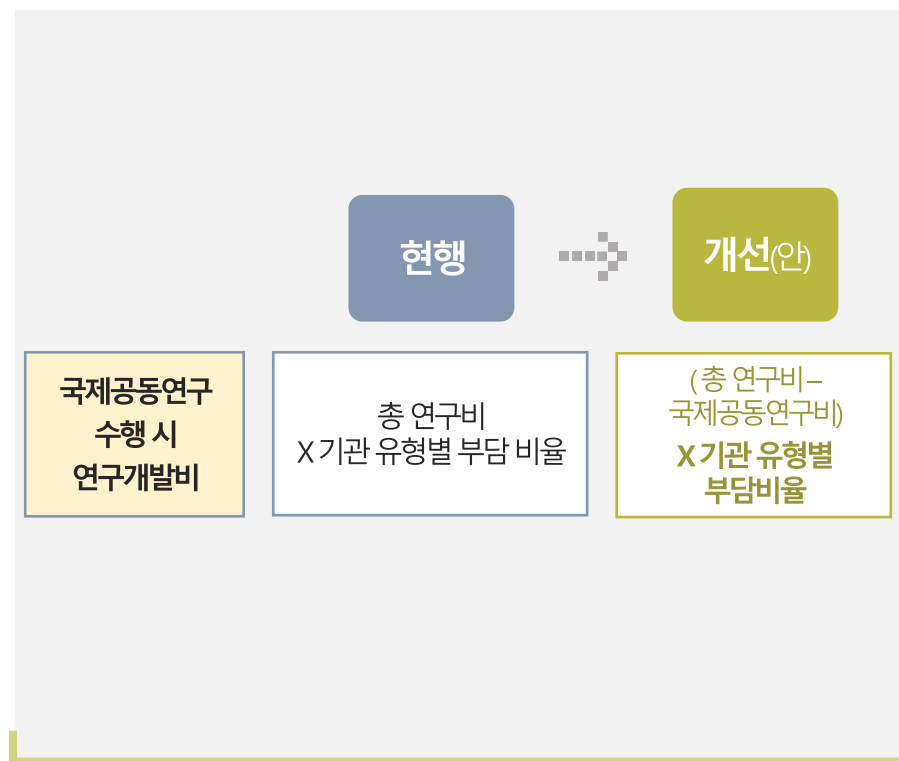
- ✓ 국가 R&D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은 매칭 비율에 따라 전체 연구비 중 일부를 의무 부담, 그 중 일부는 현금 부담

* 기관부담 연구비 비율 : 총 연구비의 25%(중소), 30%(중견), 50%(대기업) 이상
* 현금비율 : 기관부담 연구비의 10%(중소), 13%(중견), 15%(대기업) 이상

- ✓ 영리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매칭 비율에 따라 기관부담금 의무 발생

개선방안

- ✓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비에 대해서만 매칭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개정

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2)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(3)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예외 기준 마련

현장의 목소리



“국제협력 활성화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
선진기술 유입 획득, 글로벌 인재 육성 등
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예외 필요”

현황 및 문제점

- ✓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5개(책임자 3개 포함)이며,
필요시 예외 규정에 따라 과제 수 적용에서 예외* 가능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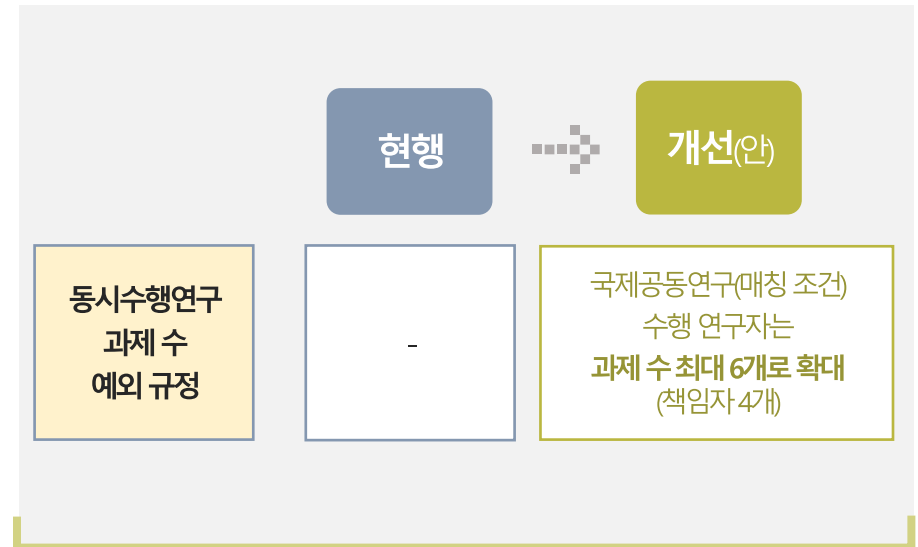
* (예외) 6개월 이내 종료 과제,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 연구, 시험·검사·분석 과제
과제조정 및 관리 목적의 과제, 기반 구축, 고등교육재정지원, 인력양성 및
학술활동 과제,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,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과제
비영리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, 과기자문회의 심의 과제

개선방안

- ✓ 해외소재기관이 주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
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자에 대한
동시수행 과제 수 일부 완화 추진

— 국제공동연구의 특성 및 업무부담, 연구수행 전념이라는 제도
취지 등을 고려하여 1개 과제에 한하여 추가 예외를 허용

* 국제공동연구를 1개 이상 포함할 시, 동시수행 과제 수 최대 6개(그 중 책임자 4개)

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3)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(1) 국외 수혜정보 관리체계 구축

현장의 목소리



“해외 주요국은 국가 R&D 신청 시 연구자의 외부자금 수혜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, 우리의 경우 관련 제도가 부재함”

현황 및 문제점

- ✓ 주요국, 국가 R&D 신청 시 해외자금 수혜정보 보고 의무화 반면, 국내의 경우 관련 제도 부재 및 자체 관리체계 미흡

* 규정 보유 연구기관 비중은 대학 43.7%, 공공연 75.8%, 기업 83.3% 수준(23.6월 설문)

국가	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수혜현황 신고 정책 사례
	- 정부연구비 신청 시 물질적·비물질적 외국수혜 현황 신고 의무화
	- 국외 포함 타 연구자금 수혜현황 신고 의무화 및 관련 시스템 개편
	- 외국기관과의 관계 등 포함 개인적·영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
	- 외국 인재프로그램, 외국연구지원 등 외국영향 관련 정보공개 강조

개선방안

- ✓ 국가 R&D 수행 시, 연구자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국외 수혜정보 보고제도 도입·운영

- (작성대상) 외국기관으로부터 금전적, 비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(연구)책임자
- (작성시기) 국가 R&D 과제 신청, 지정 시(보안 과제), 협약 및 국가 R&D 수행 중(모든과제)
- (적성내용) 과제명, 지원출처, 지원기간, 지원금액, 신청연구과제와의 차이점 등 검토

현행

개선(안)

연구보안
규정

국외수혜정보
관리체계 부재

국외수혜정보
보고제도 운영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3)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(2)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

현장의 목소리



- “보안과제 분류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분류가 어렵고, 보안과제 분류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(전문기관)”
- “보안조치사항을 수행하는 근접지원인력에 대한 보안수당 미지급(출연연)”

현황 및 문제점

- ✓ 보안과제 분류 저조, 국가안보 위주로 보안과제 분류 부처가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제한적
* 국가 R&D 과제 중 보안과제는 약 0.81%(국방부·방사청 555건, 기타 53건, '21년 기준)
- ✓ 보안과제 분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나, 실제로는 분류위원회가 아닌 기획·선정 시 분류
- ✓ 인센티브 부족으로 보안과제 관련 업무 기피

개선방안

- ✓ 보안과제 분류 기준 추가로 연구자산 보호 강화, 보안수당 대상 확대 및 연구지원체계 평가 시 반영 강화
 - 과제 기획·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에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, 과제 수행 중 재분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분류가이드 제시)

	현행	개선(안)
보안과제 관리	한정된 보안과제 분류기준, 공고 전 분류 위주	보안과제 분류기준 추가 보안등급 분류 절차 세분화·유연화
인센티브	① 보안수당 대상: 연구자 ② 지원체계평가: 연구보안 관리비, 연구보안 교육, 연구보안 인력 관리	① 보안수당 대상: 연구자 및 근접 지원인력 ② 지원체계평가: 연구보안 관리비, 연구보안 교육, 연구보안 인력 관련 반영 강화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3)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(3) 연구보안 현장 가이드라인 및 해외사례집 마련

현장의 목소리



“연구기관이 연구보안 규정을 제정하거나 해외로부터 연구 제의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부재(출연연·대학)”

현황 및 문제점

☑ 주요국 연구보안정책, 연구계·학계의 동향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연구보안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미흡

☑ 연구기관에 연구보안 관련 전담조직 또는 인력 부족
현장에서 참고할 구체적인 안내서 부재

* 구체적인 안내서가 없어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출입·사용 등 출연연 단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소속 연구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발생

개선방안

☑ 연구보안 관련 해외 사례집 및 국가 R&D 수행 단계별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

- 미국, 일본, 영국, 호주의 연구보안 정책사례 및 연구기관의 규정 연구자산탈취 위험 사례 등 소개하는 해외사례집 마련·배포(236)
- 연구기관 및 연구자 대상 국가 R&D 수행 단계별 연구자산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

* (가이드라인 방향) 참여연구원 관리, 성과물·기술 이전, 정보통신망 관리, 연구시설 관리, 실태점검 등에 대해 연구기관·연구자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

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4)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

(1)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

현장의 목소리



- “개방과 융합시대에 걸맞게 출연연 기본사업 외에도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폭넓은 파견활동 비용 인정 필요”
- “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도 인력지원비(간접비)로 지급가능하나 직접비에서는 사용 불가”

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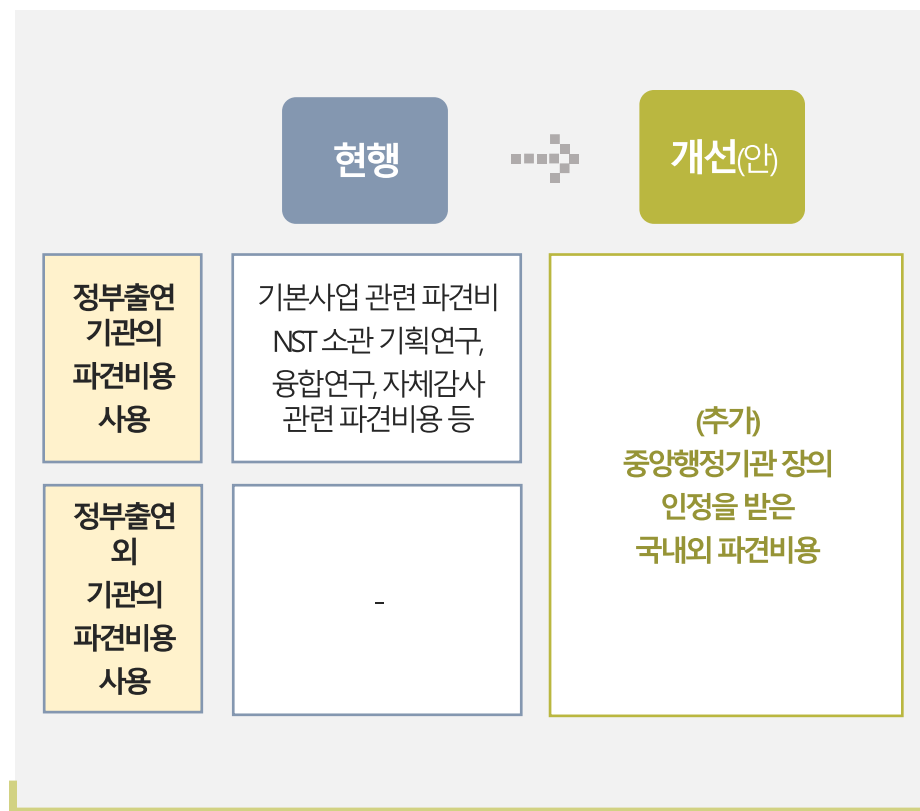
- ✓ 국가 R&D 과제에서의 파견 관련 비용 사용은 제한적 허용

* 현재는 (직접비) 출연연 기본사업 NST 소관 융합연구를 위한 파견비 등과 (간접비)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출연연 소속 인력 파견비만 사용 가능

- ✓ 국제공동연구,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 등 과제의 주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견비 사용에도 애로

개선방안

- ✓ 부처(전문기관)의 승인을 전제로 파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

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4)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

(2)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제도 폐지

현장의 목소리



“매년 수백 건의 포기특허가 발생하는데 개별 특허에 대한 포기 승인 신청제도로 인해 행정적 비용적 부담(출연연 TLO 및 대학 산단 등)”

현황 및 문제점

✓ 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, 중앙행정기관에 포기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규정

✓ 특허전략 운용이 중요한 상황에서, 특허포기 절차로 인해 시간 지연 및 비용부담 발생

< 최근 5년간 주요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건수(건) >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
A 기관	290	260	312	448	377
B 기관	401	356	416	306	418
C 기관	143	180	235	193	126
D 기관	1,472	764	1,908	1,310	937

개선방안

- ✓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의무를 폐지, 관련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개선
 - 필요시, 중앙행정기관이 운영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



2023년 제도개선(안) : (전략4)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

(3) 연구성과 부분공개 제도 신설

현장의 목소리



“보안과제 등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서 및 성과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우수 연구성과 활용이 저조”

현황 및 문제점

- ☑ 국가연구개발성과는 공개가 원칙이며, 보안과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(전문기관)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가능

* (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) 연구기관은 『산업기술보호법』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『소재부품장비산업법』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과제, 보안과제, 지식재산권 취득 예정, 외국과의 협정, 중소기업의 임치,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 가능

- ☑ 법적근거 부족으로 비공개 대상이 일부인 경우에도 전체를 비공개하여 성과 활용이 미흡

개선방안

- ☑ 국가연구개발성과 중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성과공개를 통해 활용을 촉진하도록 성과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 신설



2024년 제도개선 추진 일정(안)

'23.12월

「'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(안)」 확정

* 제도 개선(안)에 따라 혁신법령 및 관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



~'24.4월

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안·접수

부처·전문기관 및 연구현장 의견 접수(온라인/오프라인)



'24.4~7월

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검토

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제안의견 검토 및 개선과제 선정

'24.8월

「'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(안)」 수립

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

감사합니다

